

명예교수 임용 심사 기준에 관한 내규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09.6.1		16		
2	2014.8.6		17		
3	2021.4.26		18		
4	2023.8.21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명예교수 임용심사기준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본 대학교 ‘비전임교원 인사규정’에 따라 명예교수 임용에 관한 심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09.6.1.>

제2조 (평가항목) 명예교수 임용 심사의 세부 항목 및 배점은 각 항과 같다.<개정 2014.8.6.>

- ① 근속연수 : 20점 <개정 2023.8.21.>
- ② 교육 및 연구업적 : 30점
- ③ 교외봉사 및 기여도 평가 : 30점 <개정 2023.8.21.>
- ④ 교내봉사 : 20점

제3조 (평가방법) 각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는 각 항과 같이 적용하며 평가항목별 점수는 상한선을 초과하여 배점할 수 없다. <개정 2014.8.6.>

- ① 근속연수 : 10년 이상 근속한 연수에 한하여, 1년에 1점 배점한다. <개정 2014.8.6., 2023.8.21.>

- ② 교육 및 연구업적<개정 2014.8.6., 2021.4.26.>

1. 교육업적 :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.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교육업적점수}}{1,680\text{점}} \times 15$$

2. 연구업적 :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평가점수를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.

[공과대학, AI융합대학 소속 교원]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연구업적점수}}{1,200\text{점}} \times 15$$

[항공대학, 인문자연학부,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원]

$$\text{평가점수} = \frac{\text{연구업적점수}}{800\text{점}} \times 15$$

- ③ 교외봉사 및 기여도평가 : 교외봉사 및 학교에 대한 기여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여 결정한다.<개정 2014.8.6., 2023.8.21.>

1. 교원이 제출한 교외봉사 실적내용
2. 업적평가시스템에 적용된 교외봉사 실적
3. 재직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무 이행 여부(책임시간 충족, 강의평가 점수 등)

- ④ 교내봉사 : 교내 보직별로 각 호와 같이 배점하고 동일 보직은 2회까지 인정하며,

겸직에 따른 중복기간에 한 하여는 상위보직을 인정한다. 다만, 보직 인정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.

1. A급(7점) : 대학원장, 행정처장, 교무위원
2. B급(5점) : 각 교육원장, 각 학부장, 박물관장
3. C급(3점) : 학과장, 전공주임, 연구소장 등 기타보직
4. D급(1점) : 총장 임명의 각종 위원회 위원(당연직 제외)

제4조 (임용기준) 평가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(100점 기준)가 80점 이상이어야 한다. <개정 2014.8.6.>

부 칙

1. 이 지침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내규의 시행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(지침의 폐기)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‘명예교수 임용심사기준에 관한 지침’은 폐기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.
6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7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.